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국제어업조약과 저서자원

박 병 하

(국립수산진흥원)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and Demersal Fish Populations in the North Pacific Ocean

by

Byung Ha PARK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There has been establish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f fisheries in the North Pacific, such as, the Agreements of International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of Japan-Soviet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Northwest Pacific and of the Fur-seal and King Crab.

The auther reviewed these agreements and discussed about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in the future.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present status of demersal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in commercial fisheries and caught in the North Pacific.

머리말

1958년 2월~4월에 걸쳐 Geneva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어업에 관련되는 4개의 조약이 채택되었다.

-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
- (2) 공해에 관한 조약
- (3) 어업 및 공해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약
- (4) 대륙붕에 관한 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Truman 선언에 이어 Latin America 제국의 대륙붕선언, Australia의 대륙붕선언, 중공의 인접해역 폐쇄등, 광대한 인접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판례로 되었다. 또한,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2개국 또는 다변 국가간에 특정 수역 및 특정 자원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져 세계의 넓은 대양 즉 공해상에 있어서도 어업이 제한되고 원양어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어업 조약과 저서자원

우리 나라에서는 1966년 북양어업의 시험조업을 계기로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연어, 송어를 비롯하여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트롤어업이 진출 되었으나 각종 기존 어업국간의 어업 및 자원에 관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북양 진출에 많은 저해를 받고 있다.

본인은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중요한 몇 가지 어업조약 현황과 주요 규제조치사항 및 저서자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북양에 있어서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므로서 이 해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가짐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Symposium을 개최하여 주신 부산수산대학 장지원, 장선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어업조약 현황

1. 북태평양의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조약 (일명 : 미, 일, 가 조약 1952. 5. 9 서명; 1963. 6. 12 발효)

가. 취 지

어업에 관한 Truman선언의 원칙에 따라 미국, 카나다에 인접하는 공해에 있어서 미국, 일본, 카나다 3개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류의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이 보호수역에 있어서의 어로활동에 적용되는 규제와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정한 것이다.

이 조약의 머리말을 인용하면 「미국, 일본, 카나다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에 따른 공해의 어업자원을 개발할 각자의 권리 가지고 행동하며, 북태평양의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적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류의 공동이익과 체약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며, 또한 각 체약국이 자원의 보존을 촉진하는 의무를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서서

(1) 체약국간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의 최대지속적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의 확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또한 체약국에 보존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3개국을 대표하는 국제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2) 각 체약국은 보존조치에 관한 권고를 실시하고, 또한,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억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는 것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로 협정의 취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조약의 중요한 특색은 공해상에 정하여진 보호수역의 어업에 있어서 어업자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업자의 국적을 제한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원보호와 직접 관계가 되는 조치는 아니며 어업자가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간에 무관계한 것이다. 어업자의 국적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를 수역의 어업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첫째, 연어는 Alaska의 하친, 호소에서 발생하여 해양에서 성장하며, 다시 하친, 호소등에 회귀하여 산란하는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인 것이다.

미국국민은 이들 회귀하는 연어를 해안, 하구 또는 하천내에서 어획하고 있으며, 공해에서는 거의 어획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Alaska 어업보호법(1924년 6월 시행)에 의하여 50% 이상을 어획하지 않고 도피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Alaska 어업보호규칙(1954년 3월 시행)에는 상세한 자원보호조치(어기제한, 매주의 금어시간, 어구제한, 어선의 크기제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소하성 연어에 대하여 미국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타국이 회귀하는 이들 연어를 해양(공해)에서 어획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박 병 하

둘째는 종래 미국 및 카나다에 인접한 공해에 있어서 연어어업을 하지 않던 일본이 연어어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이다.

나. 조약구역

「북태평양의 전수역(각국의 영해는 제외)으로 하고 접속하는 제 해양(諸海洋)을 포함한다.」
(Fig. 1)

즉, 북태평양의 전수역이라하면 막연한 감이 있으나 본 조약에서는 규제대상 어종별로 분포, 회유하는 실질적 규제수역을 구분 설정하고 있다.

북태평양이라 한것 같으면 응용하는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FAO의 자료(1970)를 인용하면 지형학적으로는 42°N 이북을 탈하고, 수로학적으로는 40°N 이북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통계조사의 목적으로 FAO에서 시안한 구역설정에 의하면 북동태평양은 20°N 이북, 175°W 이동으로, 북서태평양은 20°N 이북, 175°W 이서해역으로 구분짓고 있다.

다. 규제대상 어종

(1) 동 협정부속서에 의하면 다음의 어종에 대하여 규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일본은 자발적으로 어획을 억제할 것과, 미국, 카나다는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가) 넙치 (*Hippoglossus stenolepis*)

북미 연안에서 발생하는 넙치로서 미국 및 카나다의 지선의 조약구역(Bering해 제외)

(나) 청어 (*Clupea pallasi*)

카나다제의 청어로서 카나다지선의 조약 구역.

(다) 연어, 송어류(*Oncorhynchus gorbuscha* 곱사송어, *Oncorhynchus keta* 백연어, *Oncorhynchus kisutch* 은연어, *Oncorhynchus nerka* 흥연어, *Oncorhynchus tschawytscha* 왕연어); 미국, 카나다 계통 연어로서 미국 및 카나다의 지선조약 구역.

(2) 미국의 하친에서 발생하는 연어, 송어류는 동부 Bering해의 조약 구역에 있어서 일본과 카나다는 자발적으로 어획을 억제하고, 미국은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종류 :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tschawytscha

라. 자발적 어획억제조치

동 협정 제3조에는 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그 임무중에는 자발적으로 억제하여야 할 어종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4조에는 자발적억제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즉 자원은

(1) 만한의 상태까지 이용되어 있다는 점.

(2) 자원보존을 위하여 어업이 규제되어 있다는 점.

(3) 광범한 과학적 연구의 주제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동 부속서에서 일본은 175°W 의 자오선상 이동(以東)의 잠정선(暫定線)상에 있어서의 연어, 송어류 5종과 북미 연안에서 발생하는 넙치및 청어에 대하여, 카나다는 미국 하친산 연어, 송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국제어업 조약과 저서자원

자발적 억제조치에 대하여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서 갑론을박 되어 왔으며, 일본은 미국, 카나다의 일방적 조치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정을 맺기로 이르렀다. 자발적 억제에 대한 찬성의견으로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였을 때 타인이 자유로히 그 예금을 인출한다면 예금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제의 원칙은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재능, 시간, 비용의 투자로서 스스로가 규제할 것을 조장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반면, 반대 의견으로서는 “타국의 회생하에 일부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생물학적 지식으로서는 자원이용의 한계 및 Stock 감소의 주 원인이 어업에 의한 것이란 실제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원칙은 자연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생산량의 제한은 특별한 경우 연어, 송어류 및 넙치등에 필요한 때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모든 관계국가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남획을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새로운 참가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연안국에 의한 어업독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의 자유원칙을 포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의 유보(留保)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의 자유를 부정하는 제한은 결코 아니며 어업의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 불가결한 규제”인 것으로 신축성있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여하간 미국, 카나다 등은 이 조치를 국제적 원칙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반면 이해 관계국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금후 1973년 개최예정인 국제해양법회의 시 과연 공해어업에 관하여 어떠한 결과가 채택될지 그 귀추가 주목 된다.

2. 북태평양의 공해의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쏘련과의 조약

(일명 : 일, 쏘어업조약, 1956. 5. 14 서명; 1956. 12. 12 발효)

가. 취지

본 조약의 머리말을 요약하면 「북서태평양에 있어서 합리적 기초하에 어업의 발전에 대하여 공동의 관심을 갖는 어류, 기타 수산동물의 자원상태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하여 상호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북서태평양에 있어서 어업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이익과 양국의 이익에 기여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자원의 보존과 증대를 도모할 의무를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양국의 관심을 갖는 어업의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유지 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를 취진하고, 또한,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약을 체결한다」로 되어 있어 근본정신은 양국에 인접한 북서태평양에 있어서 상호 관심을 갖는 자원에 대하여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와 이에 따른 보존조치를 취할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쏘련측에서는 일본의 공해어업을 규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조약구역

일본해, Okhotsk해 및 Bering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의 전수역(영해는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영해의 범위와 어업관활권에 관하여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Fig. 1).

다. 규제 조치

(1) 대상어 종

(가) 연어, 송어류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tshawytscha

(나) 청어 (*Chupea pallasi*)

(2) 규제구역

연어, 송어류에 한하여 조약구역내에 있어서의 규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A, B의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내에 있어서 이동어구에 의한 해상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Fig. 1).

(3) 어획량 제한

(가) 연간 어획량제한

일본에 대하여 연어, 송어류의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고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의 기준은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풍어년과 흉어년에 따라 어획량의 활당이 증감된다.

쓰련은 매년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시 자국의 전년도 어획량을 제시하는데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한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 척당 연간 어획량제한

모선식어업에 있어서 척당 어획량은 풍어년에 있어서는 500%, 흉어년에 있어서는 30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어기제한

어업종류에 따라 어기를 제한하고 있다.

(가) 모선식어업 : 5월 15일 ~ 8월 10일

(나) 일본의 항구를 근거지로하는 어업

A구역의 유망어업 : 6월 21일 ~ 8월 10일.

B구역(일본해제외)의 유망 및 연승어업 : 4월 30일 ~ 6월 30일

(5) 어구제한

(가) 유망의 길이 제한

규제구역내에 있어서도 수역에 따라 유망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① Okhotsk해 : 10km이 하

② 48°N와 170°25'E의 교점과 추옹유도(秋勇留島)를 연결하는 선의 동쪽과 남쪽의 태평양 : 12km이 하

③ 기타수역 : 15km이 하

④ 유망과 유망과의 간격은 수역에 따라 8~12km로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다.

단, 유망간의 간격에 있어서 48°N 이남에서 조업하는 일본의 소형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망독제한

① 모선에 속하는 유망어선에 대하여는 60mm이상으로 하나, 1963년 이후는 60% 이상을 65mm이상으로 한다.

② B구역에서 조업하고 일본의 항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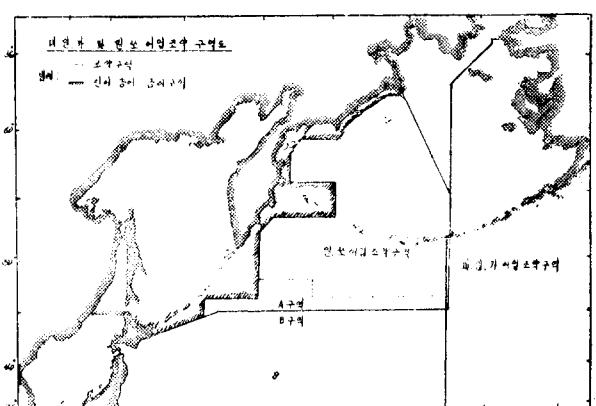


Fig. 1. Map showing International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and Japan-Soviet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Northwest Pacific.

국제어업 조약과 저서자원

근거지로 하는 유망어선은 55mm 이상으로 한다.

- (3) B구역(일본해제외)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업의 연승의 기사(枝糸)의 두께는 직경 0.5~2mm 이상으로 한다.

(6) 체장제한

청어에 대하여 길이 21cm미만의 미성숙어는 이획하지 않을 것으로 하며, 약간의 혼획은 인정하나 혼획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북태평양의 물개보존에 관한 잠정조약 (1957. 2. 9. 서명, 1957. 10. 14. 발효)

가. 취지

머리말을 요약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쏘련 정부는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물개의 총두수를 매년 최대한도의 포획을 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시키고, 또한 유지 할수 있도록 물개 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할것을 희망하고, 이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물개 자원에 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희망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로 되어 있어 최대의 포획과 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과학적 조사의 실시와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력 할것은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나. 역사적 배경

공해에 있어서의 물개보존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891년 6월 15일 물개 어업에 관한 미영협정(美英協定)이 최초의 협정으로서 미국 영토인 Pribilof Is.에 회귀하는 물개를 영국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하므로서 분쟁이 생겨 Bering해 동부에서 물개를 포획하지 않기로 조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891년 Bering해 동부의 물개어업이 금지된 이후 미국, 영국의 어선은 쏘련근해에 출어 하여 종종 나포 당하였다.

(2) 1893년 영국과 쏘련은 쏘련의 연안 10마일 이내와 Komandorskiye Is.와 Robben Is. 주변 특히 30마일 이내에 있어서 양국은 물개어업을 금지할 것을 협정하였고

(3) 1894년 미, 쏘 협정이 성립되어 영, 쏘 협정의 금지구역 내에서 미국의 물개어업이 금지되었다.

(4) 1911년 2월 미국과 영국간에 물개보호조약이 성립되어 180°W 이동, 30°N 이북에 있어서의 물개의 해상포획이 금지되었다.

(5) 1911년 7월에는 미국, 영국, 일본, 쏘련간의 물개 보호조약이 서명되어 물개의 해상 어업 금지구역은 30°N 이북의 북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6) 1940년 10월 23일 일본은 상기조약의 폐기를 통고하고 1942년부터 해상어업을 전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다시 금지 당하였다.

다. 조약구역

Bering해, Okhotsk해 및 일본해를 포함하는 30°N 이북의 태평양에 있어서 물개의 해상포획을 금지한다.

라. 과학적 조사

북태평양 물개위원회를 설치하여 5개년간 조사를 하되

(1) 물개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할것과

(2) 물개와 기타 수산자원과의 관계 및 물개가 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및 유해(有害) 정도를 조사하되 다음 항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박 병 하

- ① 각 물개군의 크기와 연령별 및 성별조성
- ② 연령군별 자연사망률 및 연령별 또는 체장별 보충량
- ③ 매년의 포획수의 변화 및 연령별, 성별조성의 변화가 보충량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 ④ 회유경로 및 월동구역과 동 구역에서 발견된 군별 두수(頭數)와 연령및 성(性)
- ⑤ 식습성(食習性)이 어류의 상업적 어획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및 어구에 미치는 손해
- ⑥ 자원의 관리 및 합리적 이용의 견지에서 본 포획방법의 유효성
- ⑦ 성별(性別), 연령별, 포획시기별 및 포획방법별로 본 물개 수피(獸皮)의 품질

마. 수피(獸皮)의 분배

육지에서 포획한 수피의 총 두수중 수량및 가격의 쌍방으로 보아 다음의 백분율에 상당하는 수량을 각국이 분배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쏘련으로 부터

카나다.....	15%
일 본.....	15%

(2) 미국으로 부터

카나다.....	15%
일 본.....	15%

위와 같이 분배하는 이유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다.

첫째, 물개의 번식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쏘련은 번식지를 갖고 있지 않은 카나다와 일본에 대하여 공해에 있어서 해상포획을 금지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물개의 포획이 되지 않는 카나다와 일본에 대하여 물개조사 비용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 기타

(1) 공식기록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Komandorskiye Is. 및 Robben Is. 번식장의 물개의 총 두수가 감소하여 각각 5만두 이하로 되면 쏘련은 포획을 정지하고, 또한, 수피의 활동도 중지하도록 되어있으며

(2) 조사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해상에서 포획 할수있는 물개의 총두수, 포획시기와 포획장소 및 각국의 포획가능 두수는 수시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짓고 있다.

4. 미, 일 왕게협정 (1964. 11. 25. 효력발생, 1966. 1. 29. 수정, 1968. 12. 23. 재수정)

가. 취지

Alaska에 인접하고 있는 동부 Bering해의 공해상에 있어서의 왕게어장에 대하여 미국은 일본 측의 어업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왕게가 정착생물로서 대륙붕의 천연자원이란 견해를 가지고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미국 측의 배타적 관할권과 관리 및 개발의 권리를 가진다고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측에 대하여는 장기간 일본국민이 이 어장에서 개발에 종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일부 어장을 조건부 개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규제한 협정인 것이다.

나. 조약구역

동부 Bering해

다. 규제조치

(1) 연간 어획량

일본 : 85,000c/s (1 c/s = 24 pound) (1967~1970)

(2) 체장제한

암컷의 흉갑(胸甲) 14.5cm 미만의 것과 탈피(脫皮)중인 것의 체포를 금한다. 만일 혼획될 때는 즉시 해중에 상처 입지 않게 방류하여야 한다.

(3) 어구 및 망목제한

(가) 통발 및 자망이외의 어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자망의 망목은 5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해에 있어서의 통발어구 사용 구역 설정

5. 왕게어업에 관한 미국과 쏘련 정부간의 협정

(일명 : 미, 쏘 왕게협정, 1965. 2. 5 효력 발생, 1967. 2. 13 수정, 1969. 1. 31 재수정)

가. 취지

미, 쏘 양국정부는 1958년 Zeneva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을 체택함에 따라 양안국은 대륙붕 상의 왕게자원에 대하여 탐색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갖는 대륙붕의 천연 자원임을 상호 인정하고, 쏘련은 동부 Bering해에 있어서의 왕게의 상업적 어획을 조건부 어획 할 수 있도록 양해된 협정이다.

나. 조약수역

동부 Bering해 (160° W 이서의 남동 Bering해)

다. 규제조치

(1) 연간 어획량

쏘련 : 1969년 ; 52,000c/s, 1970년 ; 40,000c/s (1 c/s = 24 pound)

(2) 체장제한

암게의 갑폭(甲幅) 14.5cm 이하 및 탈피직후의 게에 대한 체포금지

(3) 어구 및 망목제한

(가) 자망이외의 어구 사용금지 및
자망의 망목은 50cm 이상으로
한다.

(나) 미국 영해의 외측수역에 있
어서는 게통발만이 사용가능하
며 타종류를 어획하기 위하여
Trawl 어업을 하여서는 안된
다.

(4) 조사연구 및 자료교환

개 자원의 최대지속적 어획량을 구명하
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관한 조사연구
와 자료를 교환한다.

(가) 표지방류

(나) 생활사, 성별로 갑장(甲長), 갑폭(甲幅), 체중 및 연령, 탈피자료, 번식습성, 색이습
성, 회유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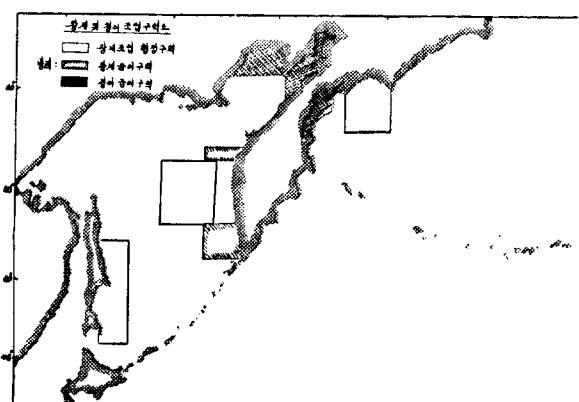


Fig. 2. Map showing the fishing area of the salmon and king crab by Japan and Soviet.

박 병 하

- (다) 연간 어획량 및 주별, 일별 어획량.
- (라) 일별조업선단수, 투망선수, 어업자수.
- (마) 통조림 제품—상자수, 1상자당 미수.
- (바) 냉동품—생산량, 미수.

저서자원의 현황

1. 중요어업별 어획량

1961~1968년간 북태평양에서 어획된 중요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1967년도에 명태가 제1위로서 55.4만톤이며, 제2위는 연어, 송어류로서 39.7만톤, 제3위는 농어류 28.3만톤이며, 가자미 24.3만톤, 대구, 왕게, 청어, 넙치, 새우류의 순으로 놓여 있다.

어종별 어획량의 연변동을 보면, 연어, 송어류는 연간 어획량은 40만톤 전후로서 거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1966년을 Peak로 1967년 이후 약간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

청어는 1963년도에 31만톤으로 Peak를 이루었으나, 1967년에는 9.4만톤으로 계속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획의 감소에 기인되는 것으로서 북동태평양의 청어자원은 아직 우려할 정도로 감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FAO 전문가의 견해인 것이다.

왕게는 연간 10만톤 전후의 어획으로 안정상태이며 장기간의 경향으로 볼 때 약간 증가경향에 놓여 있다.

새우류는 2.5만톤 전후로서 역시 평형상태이며, 명태는 1961년도 2.4만톤에서 1967년도에는 55.4만톤으로 계속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 역시 1961년 이후 1967년까지 명태와 같은 경향으로 증가되었으나, 1968년에는 감소되었고, 가자미류는 불규칙 적이며, 농어류는 1961년이후 1967년까지 계속 증가되어 28.3만톤까지 이르렀으나, 1968년에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넙치는 최근 3만톤 전후로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명태, 대구는 증가경향이나 연어, 송어류, 왕게, 새우류, 넙치등은 평형상태이고, 청어는 감소, 가자미류와 농어류는 불규칙 상태에 있어, 규제대상어종은 평형상태인 반면 명태, 대구류에 어획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2. 중요어종별 국별 어획량

가. 가자미류

일본, 미국, 카나다의 순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일본은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으나 미국, 카나다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어획감소 요인은 어종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명태, 대구류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명태, 대구류

일본, 미국, 카나다의 순위이나 일본이 전어획량의 98%를 어획하고 있으며, 연간 어획량도 매년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미국, 카나다는 국내의 이용도 문제로서 중요시하지 않는 자원이며 어획량도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어

카나다, 일본, 미국의 순위로 어획되고 있으며, 카나다의 어획량은 1964년을 peak로 이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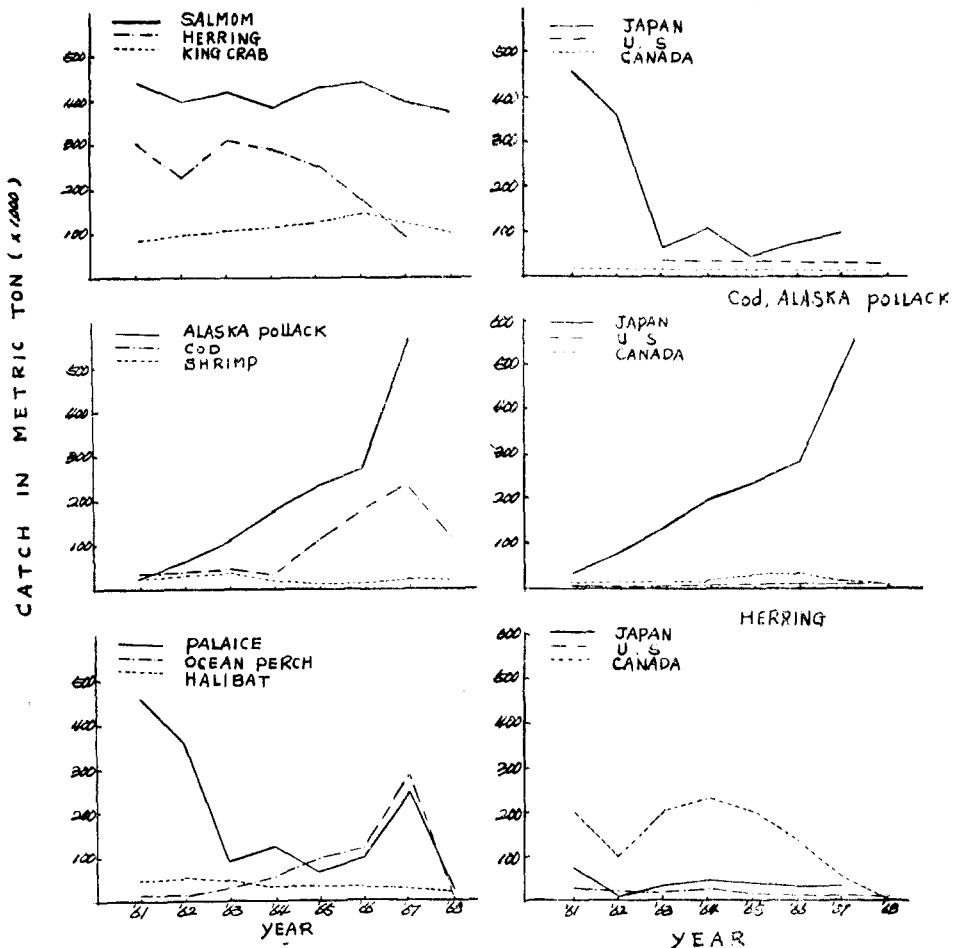


Fig. 3. Catch by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

Fig. 4. Catch by species and nations in the North Pacific Ocean.

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과 일본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은 총 어획량으로 볼 때 어획비중이 크나 명태, 대구, 가자미류 등 저급 어종의 어획증가에 기인되며, 규제대상 어종은 어획의 제한을 받아 어획비중도 그다지 크지를 않으며, 미국과 카나다는 명태, 대구의 어획량은 적으며 청어, 가자미류의 어획량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Fig. 4).

고 찰

공해에 있어서 어업의 국제적 규제는 공해어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유가 없는 곳에 국제규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태평양에 있어서 전장에서 다섯 가지의 인접국가간의 어업협정을 설명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일, 쏘 어업협정, 일, 쏘 왕개협정, 북태평양 넘치 위원회 등 2개국간의 몇 가지 협정이 특징자

박 병 헌

원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태평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해역의 저서자원에 대하여, 또한, 최근에 와서는 참치류에 대하여서도 국제규모의 규제조치가 이루어질 단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최근 점차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어업의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1958년 국제해양법 회의는 영해문제를 포함한 4개의 조약이 채택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국제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미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1973년도에 개최될 국제해양법 회의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타결을 볼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미결된 상태로서 이끌것인가가 관심사가 아닐수 없으며, 이의 협의과정에서는 각국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므로서 파란을 겪을것이 예상된다.

여하튼간에 원칙적으로 공해는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기존 어업협정 또는 연안국의 우선(優先) 문제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하에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과거에는 어업의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되어 인류사회에 공동이익을 가져옴으로써 비로서 「공해의 자유와 평등」이란 언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은 연안어업 자원이 어느정도 한계점에 도달하여 현재 이상의 어획 노력량을 연안에 투입한다 할지라도 총 어획량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보고, 130만 어민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참치어업을 비롯하여 북태평양의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트롤어업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어업협정의 규제조치 때문에 어장의 개발을 못하고 이미 개발된 일부 어장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바, 북태평양에 있어서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국은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도 국제 판례를 존중하고 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량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는 물론 자원보호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공해의 자유와 평등도 성립되고 인류의 공동이익의 추구도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田中昌一(1965)：日米加漁業條約における自發的抑止，漁業資源研究會議報，第2號。

F. A. O. (1970)；Major fishing areas for statistical purposes, FAO, Fish. Cir. No. 271.

Francis T. Christy, JR., Anthony Scott (1965) ; The Commonwealth in Ocean Fisheries, The Johns Hopkins Press.

今田 清 (1959) : 公海漁業の 國際規制, 海文堂.

J. A. Gulland (1970) ; The Fish Resources of the Ocean, FAO, Fish. Tech. Paper, No. 97.

李秉鎬 (1971) : 北洋漁業論, 太和出版社.

日本水產廳 (1969) : 漁業に關する 國際條約集.

외무부 (1966) : Agreement concerning fishery and other materials, 조약집 무자료 66/6.